

4. 都市計画法 改正

資料提供：建設部

1. 도시계획법 개정배경

교통·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광역화됨으로써 행정구역단위의 종래 도시계획방식으로는 대도시 교통체증, 환경오염 등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고, 또한 상하수도, 쓰레기처리장 등을 단위 도시별로 설치함에 따른 중복투자 등 비경제적인 운용문제가 발생하여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이기주의가 나타날 경우 협약시설의 입지선정이 점차 어려운 실정임.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을 광역화하는 광역도시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이들 문제에 대처하려고 함.

또한 주택개발, 도시재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도로,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수용능력에 부합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건축물의 용적 및 용도 등을 정하는 상세도시계획제도를 도입함.

2. 광역도시계획제도 도입

- 건설부장관은 2개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연결하는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광역도시계획구역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,
- 도로, 고속전철 등 교통수송시설의 광역적인 기능연계와 교통소통을 위해 개별 도시별로 도시계획을 관리하던 것을 광역적으로 관리하게 함.
- 상·하수도, 전기, 가스, 열공급시설,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, 화장장 등의 시설은 광역도시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.
- 광역계획의 입안은
 - 시장·군수나 특별시장, 직할시장, 도지사 협의에 의해 공동입안토록 하고,
 - 국가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시장·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입안할 수 있게 함.
- 광역시설의 설치. 관리비용부담은 시설의 이용권 또는 영향권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.

※ 광역도시계획으로 정할 사항

- 도시별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

- 환경보전

- 광역시설에 관한 계획

도로, 철도, 고속전철, 운하,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,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, 가스공급설비, 전기공급설비, 열공급설비, 통신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계획

-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 등의 건폐율 및 용적율과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건축선의 제한

- 건축물의 형태와 의장 또는 담장과 울타리의 구조에 관한 사항

- 조경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

- 기타 건축물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

3. 상세도시계획제도 도입

- 도로, 상수도, 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의 처리, 공급능력과 건축물의 총 용적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, 도시의 기능, 환경, 미관이 효율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
- 상세계획의 대상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, 공업단지, 재개발구역 등 정부가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 하고 기존 시가지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.
-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된 후 2년 이내에 시장·군수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상세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도록 함.
 - 지역, 지구의 세분
 -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미관
 - 街區 및 劃地의 규모와 조성계획

4. 기타 도시계획법 미비점 보완

- 주택용지 조성사업은 시가화 조성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여
 - 도시계획시설, 주택, 업무시설, 판매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토록 함.
-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.

도시계획구역 안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녹지지역 안에서 농지의 거래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.
- 도시계획법 위반 벌금 및 과태료를 10배로 강화함.

현행 100만원→1,000만원
(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자)
50만원→ 500만원
(도시계획 결정없이 도

시계획시설을 설치한
자)

30만원→ 300만원

(도시계획 조정·측량을
방해 또는 거부한 자)

5만원→ 50만원

(도시계획사업 시행자
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

보고 또는 자료제출을
태만히 한 자)

•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
계획임.

※ 도시계획법 제, 개정현황

- 1962. 1. 20: 제정
- 1972. 12. 30: 전면개정
- 1981. 3. 31: 부분개정